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문화예술교육지원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황 희 (문화체육관광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학교예술강사의 정의, 지원근거 및 채용에 관한 규정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「문화예술교육 지원법」 일부개정(법률 제18768호, 2022.1.18. 공포, 2022.7.19. 시행)에 따라 학교예술강사의 채용기준 및 채용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학교예술강사 채용 근거 명시(안 제13조의2 제1항)

나. 학교예술강사 채용 자격으로 자격증·학위·경력에 관한 사항 명시
(안 제13조의2 제2항)

다.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
(안 제13조의2 제3항, 제4항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: 실시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의2(학교예술강사 채용기준 및 채용기간 등) 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(이하 “진흥원”이라 한다)은 법 제15조의2 제2항에 따라 학교예술강사를 채용할 수 있다.

② 학교예술강사의 채용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

1.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
2. 관련분야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
3. 「예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」에 따라 예술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

③ 진흥원은 학교예술강사를 1년 이내로 계약하여 채용할 수 있다.

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는 진흥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2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영 시행 당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채용한 학교예술강사는 이 영에 의하여 채용된 것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13조의2(학교예술강사 채용기준 및 채용기간 등) 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(이하 “진흥원”이라 한다)은 법 제15조의2 제2항에 따라 학교예술강사를 채용할 수 있다. ② 학교예술강사의 채용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 1.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2. 관련 분야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3. 「예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」에 따라 예술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③ 진흥원은 학교예술강사를 1년 이내로 계약하여 채용할 수 있다.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채용의 세부 기준과 절차는 진흥원장이 정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	
연 락 처	(044) 203 - 2768